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 2015 세계교육포럼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항공레저 활동지원을 위한 비행제한구역 완화 관련 관련단체 회의 개최 알림

1. 우리 부는 시화, 양평, 공주 등 18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항공레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여건 및 활동 등에 대한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소속 직원(동호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15.5.14(목),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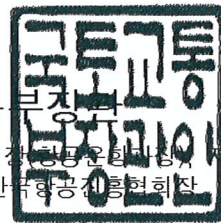
나. 장 소 :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6동 420호

다. 참석대상 : 지방항공청, 초경량 관련단체, 동호회 등

라. 회의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완화 추진계획(안) 설명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

붙임 : 항공레저 활동지원 비행제한구역 완화 추진계획(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항공청장(항공안전과장), 부산지방항공청장(항공안전과장), 제주지방항공청장(안전운항과장), 항공교통센터장(공역과장), 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국항공진흥협회장, 대한민항공회장, 대한스포츠항공협회장, 한국레저항공협회장

사무관대우 임흥묵

항공사무관 최종일

과장

전결 2015. 5. 11.
정의현

협조자

시행 항공관제과-1001

(2015. 5. 11.)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전화번호 044-201-4300 팩스번호 044-201-5631 / limhm1629@molit.go.kr / 비공개(2)

꿈꾸세요. 국민행복,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항공레저 활동지원 비행제한구역 완화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항공레저 인구는 증가하나, 대부분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항공레저산업 활성화 저해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시화, 양평, 공주, 고창, 하동, 고흥, 담양, 봉화산 등 18개 구역 반경 0.7Km~7Km, 수직 지상~150미터)을 제외한 전 구역

- 따라서, 인구밀집지역, 군사시설 등 비행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항공 레저비행 활동 보장을 위한 제한구역 완화 필요

*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항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를 말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지정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18개)내에서 주간, 시계비행 조건(비행시정 5Km 이상)일 때, 자유로운 비행활동은 보장되나,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수는 1,080대, 조종자 증명은 2,520명에게 발급('15년 3월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은 지방항공청장의 사전 허가* 필요(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는 허가 신청 시, 좌표, 반경 및 비행고도 등을 명시, 지방항공청은 관제권 포함 여부 등을 검토 후 비행을 허가

- (문제점) 지방항공청장의 사전 허가없이 비행 가능한 구역을 18개 구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레저비행 활동에 어려움

- 연간 1,160여건의 사전 허가 요청에 대한 승인으로 행정력 낭비

* 14년도 허가 실적 1,159건(서항청 관할 471건, 부항청 관할 688건)

□ 개선방안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의 완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비행제한구역 완화 추진**
 - 관련기관(국방부, 산자부, 법무부 등) 대상 **비행제한구역 수요조사 실시**
 - * 국방부 : 군사시설, 산자부 : 원전시설, 법무부 : 감호소
 - 관련기관 및 초경량비행장치 단체 등과 **제한구역의 대상, 규모 등 협의**
 - 관련기관, 단체, 동호인 대상 **제한구역 완화(안) 설명회 실시**
- 중부지방은 군사시설 등 비행제한구역 대상 시설이 과다하여 지역별, 순차적 지정 등에 관해 관계기관 협의
- 공군의 항적감시 및 식별 등에 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차세대 항공감시 멀티시스템” 이용한 비행정보 교환 방안 협의, 추진
 - * (차세대 항공감시 멀티시스템) 우리 부가 저도고 항공기 항적감시 및 비행정보 교환 등을 위해 구축, 추진중인 시스템('14~17년, 항행시설과)

□ 기대효과

- 비행제한구역 완화를 통한 항공레저 인구의 자유로운 비행활동 보장으로 **레저산업 활성화 도모 및 국민 불편 해소**
- 정부정책 기조인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의 적극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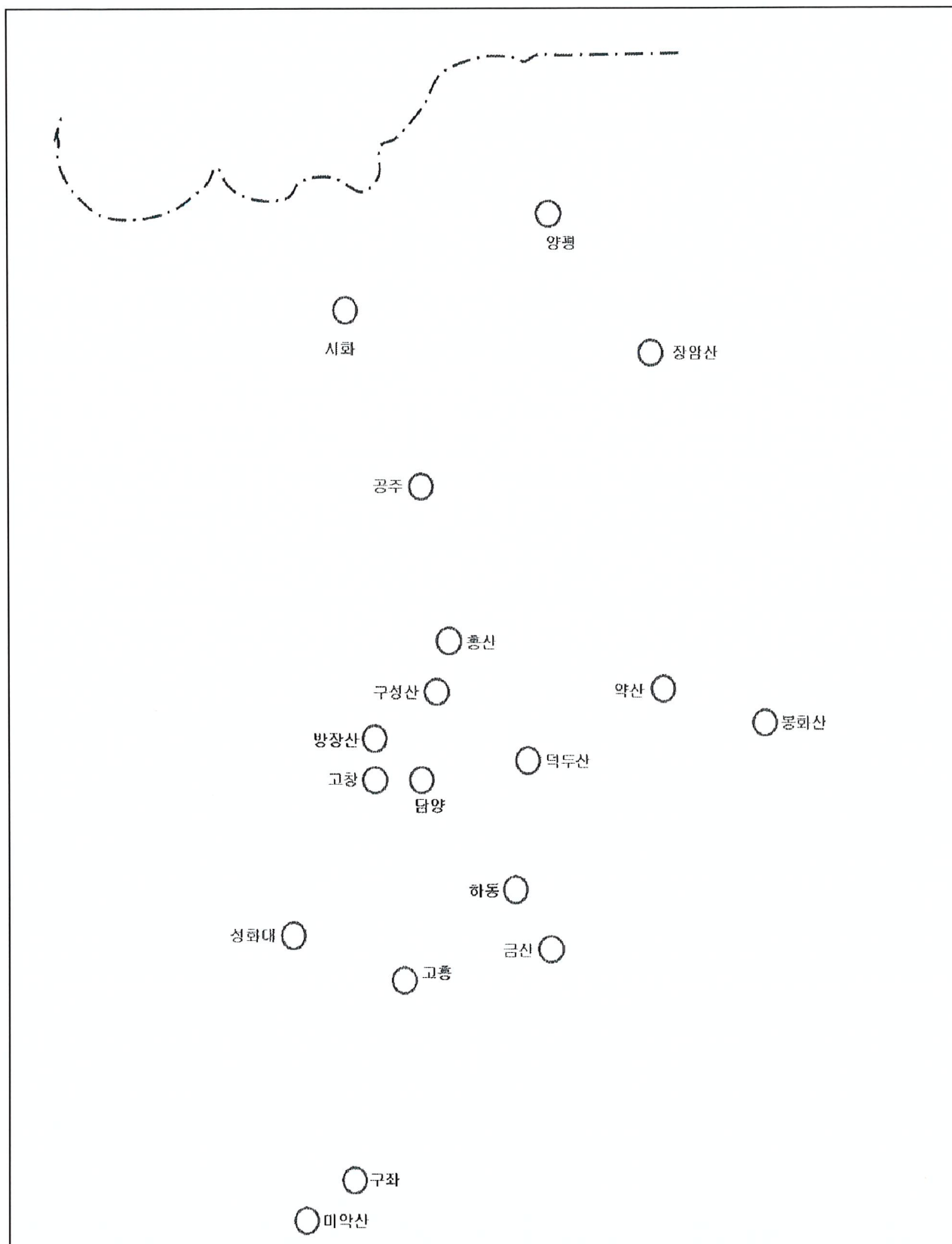
□ 추진계획

- 관계기관 대상 수요조사('15.4) 및 단체 의견수렴('15.5~)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완화방안 마련 및 설명회**('15.10)
- 비행제한구역 완화 방안 **확정**('15.11), 시행('16. 전반기)

참고 1**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현황**

구역번호	명칭	수평범위	수직범위
UA-2	구성산	354421N 1270027E 반경 1.8 KM (1.0 NM)	500FT AGL 지표면
UA-3	약산	354421N 1282502E 반경 0.7 KM (0.4 NM)	
UA-4	봉화산	353731N 1290532E 반경 4.0 KM (2.2 NM)	
UA-5	덕두산	352441N 1273157E 반경 4.5 KM (2.4 NM)	
UA-6	금산	344411N 1275852E 반경 2.1 KM (1.1 NM)	
UA-7	홍산	354941N 1270452E 반경 1.2 KM (0.7 NM)	
UA-9	양평	373010N 1272300E - 373010N 1273200E - 372700N 1273200E - 372700N 1272300E (가로 13KM × 세로 6KM)	
UA-10	고창	352311N 1264353E 반경 4.0 KM (2.2 NM)	
UA-14	공주	363225N 1265614E - 363045N 1265746E - 363002N 1270713E - 362604N 1270553E - 362805N 1265427E - 363141N 1265417E (가로 20KM × 세로 11KM)	
UA-19	시화	371751N 1264215E - 371724N 1265000E - 371430N 1265000E - 371315N 1264628E - 371245N 1264029E - 371244N 1263342E - 371414N 1263319E (가로 24KM × 세로 10KM)	
UA-20	성화대	344157N 1263101E 반경 5.4 KM (3 NM)	
UA-21	방장산	352658N 1264417E 반경 3.0 KM (1.6 NM)	
UA-22	고흥	343640N 1271221E 반경 5.6 KM (3.0 NM)	
UA-23	담양	352030N 1270148E 반경 5.6 KM (3.0 NM)	
UA-24	구좌	332841N 1264922E 반경 2.8 KM (1.5 NM)	
UA-25	하동	350147N 1274325E - 350145N 1274741E - 345915N 1274739E - 345916N 1274324E (가로 6KM × 세로 4KM)	
UA-26	장암산	372338N 1282419E - 372410N 1282810E - 372153N 1282610E - 372211N 1282331E (가로 5KM × 세로 4KM)	
UA-27	마악산	331800N 1263316E 반경 1.2 KM (0.7 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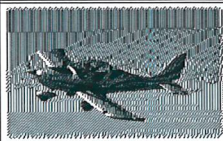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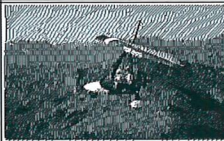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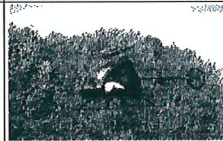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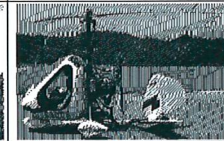
※ 현재 총18개 구역을 지정 운영 중(27개 중 9개(UA-1·8·11·12·14~18)는 폐쇄됨)

붙임**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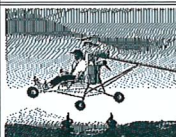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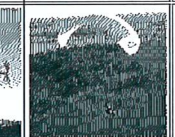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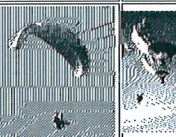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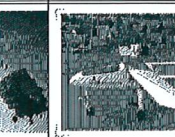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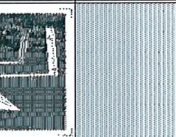
참고 2**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현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분류기준**

구 분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비고(항공기)
무게기준	자체중량 11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최대이륙중량 600kg 초과
좌 석 수	1인승	2인승 이하	좌석제한 없음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현황(‘15.4.2. 기준 1,279대)**○ 경량항공기 등록대수(198대) (‘15.4.10. 기준)**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181대	4대	4대	5대	4대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수(1,080대) (‘15.4.2 기준)

구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합계
										
	체중이동	타면조종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초경량헬리콥터		영리목적		무인동력	무인비행선	
서항청	3	3	○	○	222	189	56	217	20	710
부항청	1	11	○	○	63	47	2	196	16	336
제항청	○	○	○	○	○	15	3	16	○	34
합계	18대		○대		285대	251대	61대	465대		1,080대

※ 무인비행장치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멀티콥터 신고대수(서항청 32대, 부항청 76대, 제항청11)

□ 자격증명 대상 및 현황

-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일부(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전체

- 자격증명 부여 현황 ('15.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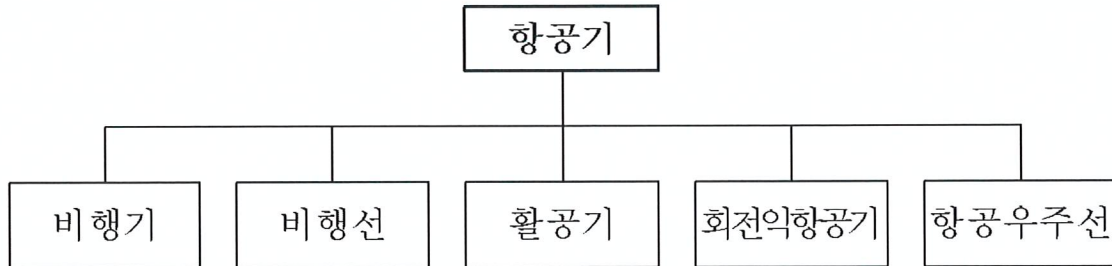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계	동력비 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유인자 유기구	패러 플레인	무인 비행기	무인회 전익비 행장치	무인 비행선
2004년	0	370	366	4	0	0	0	0	0
2005년	0	249	243	6	0	0	0	0	0
2006년	0	130	126	4	0	0	0	0	0
2007년	0	184	184	0	0	0	0	0	0
2008년	0	250	249	1	0	0	0	0	0
2009년	267	380	185	0	48	147	0	0	0
2010년	210	122	46	0	3	73	0	0	0
2011년	141	38	27	0	2	9	0	0	0
2012년	94	39	8	0	16	15	0	0	0
2013년	148	90	3	0	1	22	52	0	12
2014년	66	635	2	0	2	7	9	606	9
2015년	14	33	1	0	5	1	0	69	1
계	940	2,520	1,440	15	77	274	61	675	22

□ 항공기 등의 구분 및 안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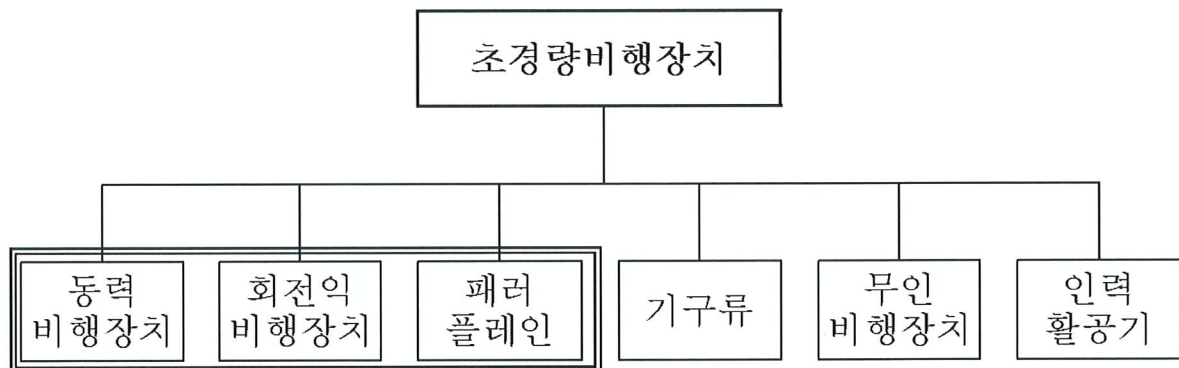
- **(항공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

*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에 대해서는 형식증명 필요(항공법 제17조)



-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적은 규모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패러플레인,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및 인력활공기로 구분되며 **각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용**

* 형식증명 대신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함(항공법 제23조4항, 제24조제2항)



(경량항공기)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미국의 스포츠항공기(LSA, Light Sports Aircraft)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경량항공기로 분류, 안전기준 적용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및 패러플레인중 **2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의 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재분류

붙임

항공기 등의 종류



